

OK법조윤리기출해설

2025년판 1쇄 정오표

(2025년 04월 14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5년 03월 06일 발행된 “OK법조윤리기출해설 (2025년판)”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OK법조윤리기출해설(2025년판) 2025년판(2025년) 1쇄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5년 04월 14일 기준)

2025년 03월 06일 발행된 OK법조윤리기출해설(2025년판) 1쇄의 추가(보완) 내용 및 오타자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추가적으로 정오내용이 발견되는 대로 본 정오표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페이지 [위치]	수정사항
<p>p. 64 - 14회 문 35</p>	<p>[해설 및 정답 - 수정]</p> <p>②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(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).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다.</p> <p>③ 예전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운송수단에서의 음성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고, 운송수단이나 운송수단이 정차하는 곳의 명칭에 변호사등을 부기하는 행위도 금지함(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). 정답 ②, ③</p>
<p>p. 73 - 9회 문 6</p>	<p>[해설 및 정답 - 수정]</p> <p>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중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를 전문변호사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.</p> <p>③ 예전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운송수단에서의 음성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고, 운송수단이나 운송수단이 정차하는 곳의 명칭에 변호사등을 부기하는 행위도 금지함(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). 정답 ①, ③</p>
<p>p. 86 - 13회 문 30</p>	<p>[기존 해설 및 정답 삭제]</p> <p>정답 정답 없음</p>